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서울특별시장(복지정책과장)

(경유)

제목 2015년 맞춤형 교육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비용 부담 개선건의

2015년 맞춤형 교육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보장비용 부담 수급자 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.

1. 관련규정

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(보장기관)

- 이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, 구청장(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 교육감)을 말한다.

나. 교육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

-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, 시군구에서 교육급여 예산부담

2. 교육급여 수급자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고등학생	중학생	초등학생
계	592	407	117	68
중구민	260	111	86	63
타 지역주민	332	296	31	5

3. 개선 건의사유

가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음.

나. 타 자치구민에 대한 교육급여 부담으로 지역주민 불만

4. 우리구 의견

-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, 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생활보장팀장 **김인배** 사회복지과장 **김화전** 복지환경국장 **유용열** 08/07

협조자

시행 사회복지과-28971 () 접수 ()
우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 본관1층 / <http://www.junggu.seoul.kr>
전화 3396-5351 /전송 02-3396-4332 / kkijmmkkh@junggu.seoul.kr / 대시민공개